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동아리연합회칙

1991.09.22. 총동아리연합회칙 선포
2015.09.01. 제1차 회칙 전면개정
2017.05.17. 제2차 회칙 전면개정
2017.09.05. 제3차 회칙 전면개정
2018.05.08. 제4차 회칙 부분개정
2018.09.03. 제5차 회칙 전면개정
2019.10.07. 제6차 회칙 전면개정
2020.09.07. 제7차 회칙 전면개정
2021.01.04. 제8차 회칙 부분개정
2021.07.19. 제9차 회칙 부분개정
2025.09.01 제10차 회칙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2장	동아리인 총회
제3장	동아리 대표자회의
제4장	운영위원회
제5장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
제6장	분과장 및 분과회의
제7장	재정
제8장	등록
제9장	징계
제10장	선거
제11장	회칙 개정

전 문

1980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설립과 함께 형성된 총동아리연합회는 본교에 존재하는 모든 학생단체의 전신(前身)으로,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학과의 역량을 결집한 학우들의 유일무이한 단체였다. 따라서 총동아리연합회는 민족 고대 세종의 역사와 전통, 문화의 중심으로 학우들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며 공동체 문화의 산실로 거듭 나게 되었다.

총동아리연합회는 발족한 이래로, 대외적으로는 1980년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여 지성인(知性人)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였고, 대내적으로는 1989년 안암동 상경 투쟁을 통한 지금의 학술정보원, 과학기술대학 (구 과기대), 자유관 및 정의관 (기숙사)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민족고대세종의 지속적인 발전과 그 궤를 함께 하였다. 즉 총동아리연합회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통해 교양과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차원을 넘어,

이 사회의 모순된 현실 및 민족고대세종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학생단체인 것이다. 따라서 총동아리연합회는 외부의 압력을 받을 수 없으며, 총동아리연합회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고대세종의 발전, 고대세종 문화의 형성, 복구, 창조, 계승을 본 단체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또한 우리의 이상(理想)은 '자주', 즉 자주총동아리연합회로 본 단체에 속한 모든 동아리들과 1500여명의 학우들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이를 통해 결의하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동아리연합회 또는 자주(총)동아리연합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

제2조 (목적)

- 1항 본회는 창조적 대학문화 창달의 주체적 담당자인 전 동아리의 역량을 통합하여 대학의 자율화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항 본회는 모든 동아리인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동아리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자격)

- 1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인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항 본회의 전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2항 본회의 전 회원은 제4조 1항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표권을 가지며, 특정 요건(제58조)이 충족되는 경우 피선거권을 갖는다.
- 3항 본회의 회원은 본회 및 다른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정당한 동아리 활동에 침해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 4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 5항 본회의 회원은 총동아리연합회 차원의 행사, 제반활동에 대해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5조 (조직)

- 1항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의결기구로 동아리인 총회, 동아리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분과회의를 둔다.
- 2항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총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더불어 부회장 및 사무국, 기획국, 홍보국, 문화국을 포함한 4개의 집행국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1호 집행국 조직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의결)

- 1항 모든 일반안건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항 제15조 5항, 6항에 해당하는 특별안건은 그 규정사안에 따른다.

제2장 동아리인 총회

제7조 (구성) 동아리인 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회원전체로 구성한다.

제8조 (권한) 총회는 동아리활동 및 동아리인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9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맡는다.

제10조 (소집)

1항 총회는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요구 또는 재적동아리 1/4이상, 재적회원 1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2항 총회는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 단서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11조 (개최 및 의결)

1항 총회는 재적동아리 1/4이상, 재적회원 1/10이상의 성원으로 개최한다.

단,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할 시에는 토의권만 갖는다.

2항 안건에 관한 특별 이해관계자 및 동아리는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3장 동아리대표자회의

제12조 (지위) 동아리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실질적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제13조 (구성)

1항 동아리대표자회의는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각 동아리회장으로 구성된다.

2항 특정 동아리회장이 부재 시, 해당 동아리에서는 회장의 권한을 위임 받을 자격이 있는 대표 1인을 참가시켜야 한다.

1호 제2항의 '위임 받을 자격이 있는 대표 1인'이란 매학기에 제출하는 자치등록원서에 명시된 부회장, 총무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를 가진 2인 및 대리인 2인을 의미한다.

2호 동아리 회장은 자치등록원서를 제출할 때 동아리에 한 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임원이 아닌 학우 2인까지 대리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호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동아리대표자회의에 해당 동아리회장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4호 제1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은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그 어떠한 권한도 행사가 불가하다.

3항 특정 분과장 및 집행국장이 부재 시, 해당 분과 및 집행국에서는 권한을 위임 받을 자격이 있는 대표 1인을 참가시켜야 한다.

1호 제3항의 '위임 받을 자격이 있는 대표 1인'이란 분과장의 대리인으로는 해당 분과 내 동아리 회장, 집행국장의 대리인으로는 동아리연합회 집행국 내 1인을 의미한다.

2호 제1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은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그 어떠한 권한도 행사가 불가하다.

능하다.

제14조 (권한)

- 1항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선출권
- 2항 각 분과와 집행부의 사업계획 심의, 승인권
- 3항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 의결권
- 4항 동아리의 자치활동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시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
- 5항 동아리 등록취소에 관한 심의, 의결권
- 6항 분과의 신설, 통합, 폐지에 관한 의결권
- 7항 예산안의 심의, 의결권
- 8항 동아리인 총회 소집 요구권
- 9항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사무국장, 기획국장, 홍보국장, 문화국장에 대한 탄핵권
 - 1호 3개 분과 이상의 동아리 대표자 10인 이상의 발의로 한다.
- 10항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궐위 시 보궐선거에 대한 결정권
- 11항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임시대표자회의 소집 요구권 또는 운영위원회로의 결정 위임권
- 12항 신규 동아리 등록에 대한 의결권
- 13항 기타 중요 안건 및 특별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

제15조 (의결 및 효력)

- 1항 제14조의 5항, 7항, 9항 12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가부(可否)로 의결한다.
- 2항 제14조의 3항은 재적인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가부(可否)로 의결한다.
- 3항 제15조 1항, 2항에 명시된 항목들을 제외한, 제14조의 나머지 항들은 모두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의 과반수 가부(可否)로 의결한다.
(제14조 3, 5, 7, 9, 12항 제외)
- 4항 특별 안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거수투표로 의결한다.
 - 1호 무기명 투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 5항 특별 안건이란 신규 동아리 등록, 동아리방 심사, 징계에 관한 건(제적/박탈), 특정 동아리 대상 안건을 의미한다.
 - 1호 제5항의 징계에 관한 건에 '경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 2호 위에 명시된 안건을 제외하고, 특별 안건과 일반 안건의 구분은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 6항 특별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분과장의 참관 하에 부회장이 이를 대표하고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안건에 대한 가부(可否)를 공표한다.
- 7항 제14조의 모든 권한은 의결하면 그 즉시 효력을 갖는다.
- 8항 안건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자 및 동아리는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16조 (소집)

- 1항 정기회의인 정기대표자회의는 3, 4, 5, 6, 9, 10, 12월에 소집한다.
- 2항 정기회의인 정기대표자회의는 매달 첫번째 월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집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호를 따른다.
 - 1호 공휴일이 종료된 후로부터 첫 번째 날
- 3항 의장은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함께 정기대표자회의를 공고한다.
- 4항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할 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표자회의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긴급대표자회의)

- 1항 재적동아리대표자 1/4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의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 2항 긴급대표자회의 역시 정기대표자회의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그 권한과 효력은 동일하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8조 (지위) 본회의 제반 행정적 실무를 위한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19조 (구성)

- 1항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집행국장,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 2항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된다.
- 3항 특정 분과장 및 집행국장이 부재 시, 해당 분과 및 집행국에서는 권한을 위임 받을 자격이 있는 대표 1인을 참가시켜야한다.
 - 1호 제3항의 '위임 받을 자격이 있는 대표 1인'이란 분과장의 대리인으로는 해당 분과 내 동아리 회장, 집행국장의 대리인으로는 동아리연합회 집행국 내 1인을 의미한다.
 - 2호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에서 해당 분과장 및 집행국장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3호 제1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은 운영위원회의에서 그 어떠한 권한도 행사가 불가하다.

제20조 (권한)

- 1항 대표자회의의 제반 의결사항을 실무 처리한다.
- 2항 총동아리연합회의 집행예산, 각 동아리들의 운영 및 활동을 감사한다.
- 3항 신규 동아리의 등록을 직권으로 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4항 임시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권을 가진다.
- 5항 대표자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대표자회의에서 결정권을 위임 받아올 경우, 대표자회의의 업무 및 권한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집행하고 이를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6항 대표자회의에 제출되어 승인된 사업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을 계획을 추진하고 다음 대표자회의에서 승인 받을 수 있다.

7항 안건에 관한 특별 이해관계자 및 동아리는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21조 (소집)

1항 정기회의는 3주에 1번 이상 진행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1호 단, 종강과 개강 사이에서는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2항 임시회의는 운영위원회의 3인 이상의 요구, 또는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2조 (의결 및 효력)

1항 의장은 안건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한다.

2항 재적인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가부(可否)로 의결한다.

3항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이 적용된다.

1호 일사부재의의 원칙 적용기간은 한 회기에 한한다.

2호 특별 안건을 제외한 일반 안건은 거수투표로 진행한다.

제5장 총동아리연합회 집행부

제23조 (집행부의 지위와 구성)

1항 본회의 실질적 최고 집행기구이다.

2항 집행부는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사무국, 기획국, 홍보국, 문화국으로 구성된다.

3항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24조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지위와 역할)

1항 자주총동아리연합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여 동아리인 총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2항 동아리인의 모든 자율적 행사를 주관한다.

3항 각 동아리 및 회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업무집행에 있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의무를 지닌다.

제25조 (총동아리연합회의 회장의 권한)

1항 총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2항 총회, 운영위원회, 대표자회의 소집권을 가진다.

3항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의 지명, 집행국장의 임명권을 가진다.

1호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지명을 거친 후, 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다.

4항 동아리 징계안의 발의권을 가진다.

5항 회칙 개정안의 발의권을 가진다.

6항 기타 주요안건에 관한 발의권을 가진다.

제26조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의 지위와 역할)

1항 자주총동아리연합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여 동아리인 총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부의장이 된다.

2항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도와 총동아리연합회의 대내외적 업무를 수행한다.

제27조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의 권한)

1항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궐위 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한다.

1호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남은 임기를 승계하여 수행한다.

2호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모든 역할과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2항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위임 하에, 제24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 (집행국의 지위)

1항 본회의 실질적 집행기구이다.

제29조 (집행국 구성)

1항 집행국은 사무국, 기획국, 홍보국, 문화국으로 구성한다.

2항 집행국 구성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0조 (집행국의 업무 및 권한)

1항 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2항 각 국장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동의를 얻어 적당한 수의 차장 및 국원을 둘 수 있다.

3항 각 국장은 총동아리연합회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분담하여 이를 수행한다.

제6장 분과장 및 분과회의

제31조 (분과장의 지위) 분과에 속한 동아리를 대표하여 운영위원이 된다.

제32조 (분과장의 역할과 권한)

1항 분과회의 소집권을 갖는다.

2항 분과특성에 맞는 제반활동을 심의, 결정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집행한다.

3항 해당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4항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들의 활동내역 및 차후계획을 파악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3조 (경고)

1항 징계 경우

- 1호 활동 보고 미흡 또는 누락
- 2호 의결권 회의 불참
- 3호 총동아리연합회의 목적과 취지를 위배하는 경우

2항 징계 부여 시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징계를 결정하며, 일정 사안에 대하여 내부 논의를 통해 중복 징계나 상위 차원의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 1호 구두 경고
- 2호 사과문 게재
- 3호 해당 임기 이후로 연임 불가
- 4호 분과 회의를 통한 탄핵 회의 의결

제34조 (분과회의의 목적) 각 분과의 특수성을 근거로 분과 고유의 업무를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한다.

제35조 (분과회의의 구성)

1항 분과장과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회장들로 구성된다.

2항 특정 동아리회장의 부재 시, 해당 동아리에서는 회장의 권한을 위임 받을 자격이 있는 대표 1인을 참가시켜야 한다.

1호 제2항의 '위임받을 자격이 있는 대표 1인'이란 매학기에 제출하는 자치등록원서에 명시된 부회장, 총무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2호 제1호에서 규정된 사람은 분과회의에 해당 동아리회장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3호 제1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람은 분과회의에서 그 어떠한 권한도 행사가 불가하다.

제36조 (분과회의의 역할 및 권한)

1항 각 분과에 속한 동아리의 제반활동에 대한 행정적 사무를 섭외한다.

2항 총동아리연합회 행사를 분과별로 분담시켜 주관한다.

3항 각 분과의 매체연구 및 개발, 시행한다.

4항 분과장 탄핵권을 갖는다.

1호 탄핵회의는 의장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부의장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그리고 분과 회장들로 구성된다.

2호 재적 인원 2/3 참석과 2/3 이상의 가부(可否)로 결정한다.

3호 의결구성원은 분과 회장들로 한다.

4호 의장의 재량에 따라 분과장은 참관 및 발언이 가능하다.

5항 각 분과 회장들에게 동아리 사업 및 계획 등을 보고받는다.

제37조 (분과회의 소집)

1항 정기회의는 각 분과의 실정에 맞게 분과회의를 상설화 한다.

2항 임시회의는 분과장 또는 동아리대표자 3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단, 동아리 수가 3개 이하인 분과는 전원 요구로 소집한다.

제38조 (분과)

1항 본회는 각 동아리의 성격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공연예술분과, 기악예술분과,

전시창작분과, 과학기술분과, 학술분과, 사회공헌분과, 스포츠분과의 총 7개의 분과를 둔다.

2항 분과의 신설, 통폐합은 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제7장 재 정

제39조 (수입)

1항 본회의 재정은 총동아리연합회의 예산, 교비보조로 한다.

2항 본회 차원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본회의 수익금이 된다.

3항 각 사회단체의 동아리 전체에 대한 기부금은 본회의 수익금이 된다.

제40조 (예산 요청 및 편성)

1항 본회의 예산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집행된다.

2항 본회의 예산회기는 3월부터 6월, 9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3항 각 동아리 회장 또는 총동아리연합회 기획국장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총동아리연합회 사무국장에게 예산을 요청한다.

4항 총동아리연합회 사무국장은 요청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한다.

제41조 (예산 승인 및 집행)

1항 지원금 관련 예산은 사무국장이 학생복지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1호 지원금은 사업계획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2항 총동아리연합회 관련 예산은 기획국장의 요청, 사무국장의 심의,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42조 (예산 보고)

1항 예산을 요청한 동아리 회장 또는 총동아리연합회 기획국장은 예산집행일로부터 1주일 안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2항 사무국장은 총동아리연합회 내 집행된 예산을 매 예산회기마다 대표자회의에 보고한다.

3항 제41조 1항의 '예산보고'는 지출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진다.

1호 지출증빙서류는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의미한다.

제43조 (집행의 원칙)

1항 모든 예산은 사업계획서를 집행의 근거로 한다.

2항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집행에 대해선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다.

3항 총동아리연합회 소속이 아닌 대상의 행사에는 찬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제44조 (이월) 매 예산회기의 흑자예산의 잉여분은 다음 예산회기의 예산으로 합산한다.

제8장 등 록

제45조 (자치등록원서)

1항 2개 단과대학 이상 4개 학과 또는 학부 회원 20인 이상 기재된 명부

1호 재학생에 한하여 인정된다.

2호 재학생이라 함은 학부생, 대학원생 및 교환학생으로 한다.

2항 동아리인 명부 1부

1호 재학생에 한하여 인정된다. 단, 회장, 부회장, 총무, 분과장 등의 직책은 휴학생 또한 가능하다.

2호 2개 단과대학 이상의 4개 학부(또는 전공) 20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항 각 동아리 소개서 1부

1호 동아리 회장, 동아리 부회장, 총무 또는 위의 직책과 동등한 5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4항 직전 학기 사업보고서

5항 해당학기 동아리 사업계획서

6항 동아리 회칙 1부

1호 가등록 동아리가 신규등록을 재신청 할 때도 다시 제출한다.

7항 회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다.

1호 해당 회기는 개강일로부터 다음 개강일 전까지로 한다.

제46조 (등록취소)

1항 재등록하지 않은 동아리

1호 등록기간에 미등록한 동아리는 경고 1회를 부여한다.

2호 1호에 의해 경고 받은 날로부터 1주 안에 재등록하지 않을 시 등록을 취소한다.

2항 동아리 징계결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동아리

1호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동아리는 그 처분일로부터 2회기 안에는 신규등록이 불가하다.

2호 등록취소 또는 제명된 동아리는 신규동아리로 재등록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가졌던 동아리방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47조 (신규등록절차)

1항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을 접수한다.

2항 제45조 요건을 충족한 서류를 총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해야 한다.

3항 총동아리연합회는 신규등록 동아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4항 기존 중앙동아리와 유사한 성격의 동아리는 등록이 불가하다.

1호 동아리 성격에 대한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호 신규등록을 하고자 하는 동아리의 소속이 예정되는 해당 분과에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5항 원칙적으로 학과 및 단과 내 소모임은 등록할 수 없다.

1호 단, 소모임의 자격을 포기한다고 선언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2호 제45조의 모든 조항을 준수한 자치등록원서를 제출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제48조 (가등록)

- 1항 제47조 3항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 동아리에 대해 심의한다.
 - 1호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탈락 또는 대표자회의 상정을 결정한다.
- 2항 가등록 동아리는 동아리대표자회의의 과반인 가부(可否)로 결정된다.
- 3항 가등록 동아리는 1년간의 등록 기간을 가지며, 등록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중앙동아리 승격에 관한 안건을 상정할 권한이 있다.
- 4항 가등록 동아리는 제45조를 매 회기마다 준수해야 한다.
- 5항 가등록 동아리의 대표자는 동아리대표자회의에 출석할 의무를 지닌다.
 - 1호 가등록 동아리 대표자는 발언권을 보유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2호 가등록 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지정한 총동아리연합회의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 3호 대표자회의의 2회 이상 불참 시 자동적으로 가등록의 권리가 취소된다.
- 6항 가등록 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회의 행사 참여에 따른 소정의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의하여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 7항 제48조 3항에 따라 안건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에 실패하면 가등록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49조 (승격)

- 1항 제48조 3항에 의거하여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가등록 동아리에 대한 승격을 심의한다.
 - 1호 승격은 동아리대표자회의의 2/3 가부(可否)로 결정된다.

제50조 (주의)

- 1항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 2항 주의가 부여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1호 분과회의와 긴급대표자회의에 1회 불참했을 시 주의 1회 부여
 - 2호 대표자회의에 있어 이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주의 1회 부여
 - 3호 의장이 지정한 대표자회의 개의 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 대표자(또는 위임자)가 참석했을 경우 주의 1회 부여
 - 4호 의장이 지정한 대표자회의 개의 시간으로부터 20분 이내 대표자(또는 위임자)가 참석했을 경우 주의 1.5회 부여
 - 5호 자치공간 내 지나친 소음으로 다른 동아리 및 학우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의 부여
 - 6호 학생회관 내 기물을 파손하거나 학생회관 건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의 부여

제9장 징 계

제51조 (경고)

- 1항 정기 대표자회의에 불참했을 시 경고 1회 부여
- 2항 대표자회의에 있어 이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아래 호에 따른 경고 부여
 - 1호 의장이 지정한 대표자회의 개의 시간으로부터 10분 이내 대표자(또는 위임자)가 참석했을 경우 주의 1회 부여
 - 2호 의장이 지정한 대표자회의 개의 시간으로부터 20분 이내 대표자(또는 위임자)가 참석했을 경우 주의 1.5회 부여
 - 3호 의장이 지정한 대표자회의 개의 시간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한 후, 대표자(또는 위임자)가 참석했을 경우 경고 1회 부여
- 3항 동아리활동이 매우 부진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 1호 위 조항에 대해 경고를 받은 동아리는 다음 학기 첫 대표자회의에서 한 학기 계획보고를 의무로 한다.
 - 2호 계획보고 누락 시, 경고 1회 부여
- 4항 매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자치등록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1회 부여

제52조 (공간반환)

- 1항 다음과 같은 경우 "공간 반환"에 해당한다.
 - 1호 1년에 2회 제명심사에 회부된 경우
 - 2호 제55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3조 (재정지원 박탈)

- 1항 다음과 같은 경우 징계 "재정지원 박탈"에 해당한다.
 - 1호 지원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2호 제42조의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호 한 학기에 경고가 1회 이상 누적된 경우
 - 4호 분과 예산을 각 동아리가 수령한 후, 해당 예산의 지출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5호 이전 학기에 제명안건에 회부된 경우
 - 6호 총동아리연합회 물품에 대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 7호 기타 공용공간이나 공공기물의 파손으로 인하여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 8호 예산집행이 행하여진 동아리 행사가 수행되지 않았을 때 예산의 반납을 요구하고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제54조 (제명)

- 1항 다음과 같은 경우 제명절차가 진행된다
 - 1호 한 학기에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 2호 총동아리연합회의 목적과 취지를 위배하는 경우

제55조 (제명절차)

- 1항 발의는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나 그 분과 내 동아리 대표자 2/3이상으로 가능하다.
- 2항 결정은 대표자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동의를 얻

어 제명한다.

제56조 (효력)

1항 제명이 된 동아리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는다.

1호 중앙동아리 등록취소와 두 회기 안에 재등록 불가

2호 공간반환

2항 징계의 유효기간은 징계의 종류 및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호 경고 1회 이하 또는 주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회기의 종료와 함께 징계의 효력이 소멸한다.

2호 경고 2회 이상을 받은 경우, 징계의 유효기간은 해당 회기 종료 후 다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0장 선 거

제57조 (선거권)

1항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선거는 대의원제로 선거권을 가진 각 동아리당 3인으로 한다.

1호 대의원은 1학기 이상 동아리에 등록되어 있고 활동을 한 동아리 회원으로 한정한다.

2항 분과장 선거는 대의원제로 선거권을 가진 각 동아리당 3인으로 한다

제58조 (피선거권)

1항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1호 4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을 필한 자

2호 2학기 이상 동아리에 등록되어 있고,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본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3호 동아리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4호 한 동아리 당 10명의 추천으로 제한한다.

5호 15개 이상 동아리의 회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항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1호 4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을 필한 자

2호 2학기 이상 동아리에 등록되어 있고,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본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3항 분과장

1호 2학기 이상 본교에 등록을 필한 자

2호 2학기 이상 해당 분과 동아리에 등록되어 있고,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본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3호 분과장은 특정 동아리의 자치등록원서에 기재된 주요 직책(회장, 부회장, 총무 또는 이와 유사)을 겸직할 수 없다.

제59조 (선거절차)

1항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 1호 선거는 매년 11월 정기대표자회의에서 시행한다.
- 2호 후보자는 선거 2주일 전에 서류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 3호 각 후보의 금전적인 접대활동을 제외한 자율적인 선거운동을 인정한다.
- 4호 당선은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 투표, 최다 득표로 당선되며, 단독후보의 경우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야 한다.
- 5호 표결은 분과장의 참관 하에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개표하고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당선자를 발표한다.
- 6호 무효표에 대한 결정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에 따른다.
- 7호 각 후보자가 회칙위반 및 부도덕적인 행동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3번 받을 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2항 분과장

- 1호 입후보자는 선거 5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2호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 3호 선거는 매년 11월 정기대표자회의에서 시행한다.

3항 재선거

- 1호 11월 대표자회의에서 회장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12월 대표자회의에서 재선거를 진행한다.
- 2호 재선거에서 회장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3월 대표자회의에서 재선거를 진행한다,
- 3호 재선거에서 회장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4항 비상대책위원장

- 1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2호 전년도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임기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3호 전년도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다.
- 4호 전년도 총동아리연합회 국장 중 1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다.
- 5호 현 총동아리연합회 분과장 중 11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다.
- 6호 현 중앙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다.
- 7호 비상대책위원장 활동 종료 시점까지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 절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을 재구성할 수 있다.

제60조 (임기)

- 1항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2항 분과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항 임기시작은 선거 당선 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 4항 임기종료는 차기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임기시작 전 날까지로 한다.
- 5항 재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선거가 진행되는 말일까지로 한다.
- 6항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를 1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1항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분과장 선거는 현직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부회장,

집행국장, 각 분과장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항 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항 단, 선거관리위원회원이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및 분과장으로 출마한 경우 위 자격을 박탈한다.

제6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기) 선거 개시 3주전에 구성을 완료한다.

제63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및 권한)

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호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호 선거인 명부작성

3호 선거 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작성

4호 선거장의 질서유지 및 감독

5호 선거 및 당선의 유효여부와 당선인의 결정

6호 선거일정 및 선거운동의 방법과 조정

7호 공청회 질의안건 수립

8호 재선거 여부결정

9호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업무

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4조 (보궐선거)

1항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의 권한과 자격을 자동 승계한다.

2항 운영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반수가 보궐선거를 청원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호 동아리대표자회의의 과반수가 보궐선거를 청원할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3항 분과장 궐위 시에는 분과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1장 회칙개정

제65조 (발의)

1항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상정한다.

2항 대표자회의에서 발의할 수 있다.

3항 3개 분과 동아리대표자 10인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4항 동아리인 40인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제66조 (절차)

1항 회칙개정 발의 시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대표자회의를 열어 의결한다.

2항 의결은 재적인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 가부(可否)로 의결한다

제67조 (공표)

1항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의결된 회칙에 대해서 3일 이내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2항 공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1호 의결된 회칙의 일부 조항이 부작용 또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한 회기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다.

2호 유예된 회칙은 다음 회기 시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제1조 (관례) 본회의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상황과 특별사안은 관례에 따름

제2조 (개정)

- 1항 본회의 회칙은 2015년 8월 31일 전면개정을 실시
- 2항 본회의 회칙은 2017년 5월 17일 부분개정을 실시
- 3항 본회의 회칙은 2017년 9월 4일 전면개정을 실시
- 4항 본회의 회칙은 2018년 5월 7일 전면개정을 실시
- 5항 본회의 회칙은 2020년 9월 7일 전면개정을 실시
- 6항 본회의 회칙은 2021년 1월 4일 부분개정을 실시
- 7항 본회의 회칙은 2021년 7월 19일 부분개정을 실시
- 8항 본회의 회칙은 2023년 10월 17일 부분개정을 실시
- 9항 본회의 회칙은 2025년 09월 01 전면개정을 실시

제3조 (시행) 본회의 회칙은 1991년 9월 22일로부터 시행함

- 1항 전면개정 후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함
- 2항 부분개정 후 201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함
- 3항 전면개정 후 2017년 9월 5일부터 시행함
- 4항 전면개정 후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함
- 5항 전면개정 후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함
- 6항 부분개정 후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함
- 7항 부분개정 후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함
- 8항 부분개정 후 202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함
- 9항 전면개정 후 2025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함